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선임 및 소방훈련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울산광역시

내 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며, 공공기관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에 의거 감독직에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하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내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공공기관(2017년 기준 1,007개 대상)은 소관 기관 근무자 등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안전교육, 자체 소방훈련(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울산소방본부 및 ○○·○○·○○·○○소방서 관할 공공기관의 소방훈련¹⁾ 실적을 확인한바, 자체소방훈련 및 소방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2015년 총 대상 887개 중 218개 대상, 2016년 총 대상 997개 중 232개 대상, 2017년 총 대상 1,007개 중 259개 대상이 [표1]과 같이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공공기관 자체 소방훈련 실시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합계	실시	미실시	기타	합계	실시	미실시	기타	합계	실시	미실시	기타
	887	643	218	26	977	715	232	32	1,007	728	259	20
○○	353	188	162	3	429	219	204	6	450	236	211	3
○○	249	225	12	12	252	227	10	15	250	227	11	12
○○	151	144	-	7	157	148	-	9	153	148	-	5
○○	134	86	44	4	139	121	18	2	154	117	37	-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감독직²⁾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여야하며, 감독직에 있

1) 공공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제1항 제9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위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기관에서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음.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갖는 사회적 대표성 및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 등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기관의 장에게 책임성을 부여한

는 사람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19조³⁾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비감독직)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2017년 울산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관리대상 공공기관 1,007개 기관 중 [표2]와 같이 10개 대상 기관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있음에도 감독직에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비감독직 현황

번호	관할 소방서	기관명	성 명	직 위
1	○○	○○○○○본부 ○○○○사업소	○○○	
2	○○	○○○○정보공사(구.○○○○공사)	○○○	
3	○○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	
4	○○	○○문화예술회관	○○○	
5	○○	○○군 국민체육센터	○○○	
6	○○	○○지방통계청 ○○사무소	○○○	○○○
7	○○	○○관리공단(○○문화재단)	○○○	○○○
8	○○	○○○○○○(하수슬러지처리시설)	○○○	○○○
9	○○	○○시립박물관	○○○	○○○
10	○○	○○은행울산지점	○○○	○○○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유치원·어린이집은 원아와 교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상시 근무자로 보아야함⁴⁾에도 일부 유치원·어린이집은 원아를 제외하고 교사들만 상시 근무

것으로 감독직에 있는 사람의 역량(영향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시설관리와 인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3)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규정에는 공공기관의 직제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또는 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비감독직)을 선임할 수 있음.

※ 감독직이 아닌 하위 직위 자가 업무수행 시 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형식적 또는 부실하게 관리 및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

- 4)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대상 중 상시 근무자 인원을 선정하면서 어린이를 제외하고 교직원만을 상시 근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합동훈련의 취지가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것인 만큼 원아(어린이)를 상시 근무자에 포함하여야 하고, 소방관서와의 합동훈련을 통해 재난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함.

자로 보아 10인 이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렇게 10인 이하 대상으로 분류된 11개 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규정에 따른 연 1회 이상 소방기관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기관과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화재발생 시 초동대응이 우려되고 있다.([표3] 참조)

[표3] 유치원·어린이집 상시 10인 이하 대상 현황

번호	관할	기관명	소방안전관리자	비 고
			성 명	(과태료)
1	○○	○○유치원	○○○	상시근무 10명 이하
2	○○	○○○○유치원(구.어린이집)(8명)	○○○	상시근무 10명 이하
3	○○	○○○○○유치원	○○○	상시근무 10명 이하
4	○○	○○○○○○○○○놀이터(7인)	○○○	상시근무 10명 이하
5	○○	○○문화센터(3인)	○○○	상시근무 10명 이하
6	○○	○○○직장어린이집	○○○	상시근무 10명 이하
7	○○	○○○○아동보호전문기관	○○○	상시근무 10명 이하
8	○○	○○4동 어린이집	○○○	상시근무 10명 이하
9	○○	○○○○유치원	○○○	상시근무 10명 이하
10	○○	○○유치원	○○○	상시근무 10명 이하
11	○○	○○유치원	○○○	상시근무 10명 이하

※ 울산광역시(○○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울산광역시장은

[시정] ① 공공기관 자체소방훈련(연 2회 이상) 미실시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소방훈련을 미실시한 대상은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등 적정 행정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19조 규정 외의 비감독 직위에 있는 대상은 감독직 직위자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③ 또한 어린이집 등 상시 거주인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10인 초과 대상이 10인 이하 대상으로 분류되어 합동소방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황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